



강원도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(조정) 및 자동 해제 알림

1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규정에 따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·의결된 「동계올림픽 특별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」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가. 공 고 일 : 2023. 3. 29.(수)

나. 지정기간 : 2023. 4. 6. ~ 2028. 4. 5.(5년)

다. 대상지역 : 강릉시 3.20km²

대상지역		면적(km ²)	비 고
합 계 : 3,196,100㎡ / 2,293필		3.20	
강릉시	초당동·강문동·송정동·견소동·운정동·저동·안현동	2.52	조정 재지정 재지정
	강동면 정동진리	0.50	
	옥계면 금진리	0.18	

라. 허가기간 만료일(2023. 4. 5.)에 따른 자동 해제

허가구역		면적(km ²)			비고 (변경사항)
		기정	증감	지정	
2개 특구		3.66	-3.66	0	
1.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		0.83	-0.83	0	
평창군	1-1. 평화올림픽 지구	0.44	-0.44	0	해제
평창군	1-2. 관광기반시설 지구	0.25	-0.25	0	해제
평창군	1-3. 대관령 관광거점 지구	0.14	-0.14	0	해제
2. 정선 생태 체험특구		2.83	-2.83	0	
정선군	2-1. 정선 생태체험 지구	2.83	-2.83	0	해제

2. 해당 기관에서는 같은 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사항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시기 바라며,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(KRAS) 용도지역지구관리 철저와 관련법령 및 업무처리 규정, 사후이용관리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,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허가구역 재지정(조정) 공고문 1부.

2.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1부.
3.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1부. 끝.

강 원 도 지 사

수신자 올림픽시설과장,강릉시장(지적과장),평창군수(민원토지과장),정선군수(민원과장)



주무관

윤국상

토지관리팀장

박명재

토지과장

전결 2023. 3. 29.

이기환

협조자

시행 토지과-4209

(2023. 3. 29.)

접수 민원과-4692

(2023. 3. 29.)

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

/ <http://provin.gangwon.kr>

전화번호 033-249-2357

팩스번호 033-249-4059

/ rnrtkd@korea.kr

/ 대국민 공개

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!